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가단1454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환철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6,642,598원 및 그 중 7,867,524원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지분 7분의 2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지분 21분의 2에 관하여 2019. 4. 1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지분 7분의 2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지분 21분의 2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02. 7. 10. 피고 B에게 900만 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연체이자율 연 28%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나. D는 2006. 5. 3. 주식회사 E에, 주식회사 E은 2011. 4. 26. F 유한회사에 순차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각 양도일 무렵 피고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F 유한회사는 2019.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9. 3. 14. 피고 B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채무의 원리금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1. 9. 14. 기준 그 대출원리금의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출과목	미상환 원금	인수 전 이자금액	인수 후 이자금액	합계
G	7,867,524원	32,268,955원	6,506,119원	46,642,598원

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분 3분의 1의 소유자이던 H은 2019. 3. 25. 사망하였고,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과 그 자녀들인 I 및 피고 B이 있었다. 위 상속인들은 2019. 4. 18. H의 소유이던 위 각 부동산을 전부 피고 C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광주지방법원 2019. 4. 18. 접수 제68023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 외에도 J,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광주지방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의 원리금 합계 46,642,598원 및 그 중 원금 7,867,52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1.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상속재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 C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킨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C을 상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 C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03. 8. 18.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피고 B에게 합계 1억 600만 원을 대여하거나 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그 밖에 신용카드 대금 채무 1,600만 원을 대위변제한 대가로 피고 B의 상속분의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 C이 피고 B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대여금채권 내지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대물변제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의 상속분을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으로서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거나 피고 C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고 그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분할협의는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피고 C을 상대로 채무자인 피고 B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지분 7분의 2 및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21분의 2(H의 공유지분 $1/3 \times$ 피고 B의 상속분 $2/7$)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윤한

별지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19층 아파트
 1층 825.70㎡, 2층 내지 19층 각 790.9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 17473.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59.6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7473.1분의 33.07

2. 광주광역시 광산구 답 1476㎡ 환.

1) 이 사건 2022. 8.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일이 '2019. 4.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주문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4. 18.'로 정정하여 인정한다.